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6

발의연월일: 2020. 6. 16.

발 의 자:김정호·정성호·김병욱

전용기 • 윤후덕 • 임종성

김경협 · 김윤덕 · 신현영

김교흥 · 강병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 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2019.5.30. 선고, 2018헌가12)을 하였음.

이에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5호).

법률 제 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를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	2
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	
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5.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
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
모이게 하는 행위	<u>거일까지</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